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5-200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출판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380호)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인쇄출판밸리 관리기본계획(변경)

대구광역시 출판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I. 산업단지 일반현황

- 1. 산업단지 개요 명칭변경 : 대구인쇄출판밸리
- 6. 입주현황 변경 : 붙임 참조

2) II.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 2. 산업단지 용도별 구분계획 중 4) 입주 관리계획

변경 전	변경 후
대구출판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대구인쇄출판밸리 관리기본계획
4) 입주 관리계획 가. 입주대상 업종 (1) 산업시설구역 ① ~ ⑬	4) 입주 관리계획 가. 입주대상 업종 (1) 산업시설구역 ① ~ ⑬ ^⑭ 산업집적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 중 지식산업센터에 적합한 공장 및 산업집적법 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가능한 업종(추가)

※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인쇄출판밸리 관리기관인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582-19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대구인쇄출판밸리 관리기본계획(변경) 1부.

부 칙

본 대구인쇄출판밸리 관리기본계획(변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대구인쇄출판밸리 -

관리기본계획(변경)

I. 산업단지 일반현황(변경)

1. 산업단지 개요(변경)

- 명칭 : (기정) 대구 출판산업단지
(변경) 대구인쇄출판밸리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동, 장동, 월성동 일원
- 면적 : 242,916.9 m²
- 관리권자 : 대구광역시장(중구 공평로 88)
- 관리기관 :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달서구 성서공단북로 308)

2. 조성목적

- 출판산업의 중장기적인 전략적 거점 확보 및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 조성
- 출판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3. 사업시행방법 및 기간

- 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 시행기간 : 2010. 1월 ~ 2013. 1월

4. 추진경위(변경)

- 출판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실시 : 2007. 9 ~ 2008. 1월
- 산업단지계획(개발계획) 수립 : 2008. 4 ~ 12월
- 산업단지계획(실시계획) 수립 : 2009. 1 ~ 12월
-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및 공고 : 2009. 8. 13
- 주민열람, 합동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 2009. 8 ~ 9월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2009. 12. 9
-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 2009. 12. 10
- 출판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구 지정 고시 : 2010. 1. 11
- 출판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 2010. 9. 15
- 출판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지구 지정 고시 : 2010. 9. 20

- 출판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 : 2010. 9. 20
- 출판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 2011. 1. 31
- 출판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지구지정 고시 : 2012. 10. 10
- 출판산업단지계획 개발사업 준공인가 공고 : 2013. 1. 10
- 출판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 2013. 4. 1
- 출판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 2014. 7. 10
- 출판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 2016. 11. 30
- 출판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 2020. 3. 2
- 출판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 2021. 11. 1
- 출판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 2022. 12. 30(추가)

5. 분양현황

구 분	총면적 (m ²)	분양 가능 면적(m ²)					조성기간	조 성 기 관		
		분 양	미분양			계				
			조성중	조성완료	소 계					
계	242,916.6	152,708.6	-	-	-	152,708.6				
산업시설구역	93,966.8	92,310.3	-	-	-	92,310.3				
지원시설구역	60,398.3	60,398.3	-	-	-	60,398.3	2010.1 ~ 2013.1	대구 도시 공사		
공공시설구역	66,440.3	-	-	-	-	-				
녹 지 구 역	22,111.5	-	-	-	-	-				

6. 입주현황(변경)

【기정】

구 분	입주업체 수			면 적(m ²)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계	136	117	19	122,505.7	92,310.3	30,195.4
2022.09.30. 현재	136	117	19	122,505.7	92,310.3	30,195.4
향후 계획	-	-	-			

【변경】

구 분	입주업체 수			면 적(m ²)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2025년 06월 기준	141	122	19	122,505.7	92,310.3	30,195.4

7. 입지여건

시설명	2021. 6월 현재	학 중		시행기관
		일 정	규 모	
도로	· 주요도로망 - 도시고속도로 - 중부내륙고속도로		· 성서IC ~ 남대구IC - 4차로, 1.55km	대구시
용수	매곡정수사업소		· 생활용수 : 721m ³ /일 - D=300, 150mm · 공업용수 : 879천m ³ /일	대구시 상수도본부
전력	한국전력 남대구지점		· 수요량 : 20,291kW - 산업시설용지 : 15,729kW - 기타시설용지 : 4,475kW	한국전력
통신	한국통신		· 수요량 : 2,665회선	한국통신
환경	성서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 하수처리 - 오수:698m ³ /일, - 폐수:321m ³ /일	
			· 폐기물처리 - 생활폐기물 : 6.01톤/일 - 사업장폐기물 : 32.74톤/일	

II.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관리 기본방향

1) 목 표

- 인쇄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촉진하고 출판콘텐츠 창작역량과 다차원적(OSMU/MSMU) 활용의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조성으로 출판산업 경쟁력 제고
- 인쇄·출판산업 관련 전·후방 업체의 집적화와 계열화 추구
-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및 저탄소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응

2) 추진방향

- 단지내 산업시설, 지원시설, 균린생활시설 등의 기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출판 산업단지로 육성·발전
- 합리적인 산업 및 지원시설 배치를 통하여 산업단지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적정 입주기업 선정유치 및 지원활동 전개
- 대명천의 친환경적인 개발과 충분한 완충녹지지역 확보로 환경 친화적인 단지로 조성
- 출판산업지원센터 설립으로 입주기업체 생산성 향상 및 비즈니스 활동 지원
- 탄소중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2. 산업단지 용도별 구분계획(변경)

1) 용도별 구역면적

총 면적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구역
242,916.9 (100%)	93,966.8 (38.68%)	60,398.3 (24.86%)	66,440.3 (27.35%)	22,111.5 (9.11%)

※ 용도별 구역 면적표 : 별첨 1

1. 산업시설구역 : 산업시설구역($92,310.3\text{m}^2$), 존치용지($1,656.5\text{m}^2$)
2. 지원시설구역 : 지원시설 용지($30,195.4\text{m}^2$), 균린생활시설용지($27,642.5\text{m}^2$)
주차장($2,560.4\text{m}^2$)
3. 공공시설구역 : 도로($62,509.9\text{m}^2$), 보행자도로($1,371.1\text{m}^2$), 공공공지(84.5m^2), 저류지($2,267.5\text{m}^2$), 오수중계펌프장(207.3m^2)
4. 녹지구역 : 공원($8,640.2\text{m}^2$), 녹지($13,471.3\text{m}^2$)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 (2) 산집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 (3)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펌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 출판업(J58)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J59)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 / 정보서비스업(J63) / 기타 제품 제조업 (C33) / 전문 서비스업(M71)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73) / 사업 지원 서비스업(N75) 관련 건축물·공작물과 그 관련시설(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 (4) 「산집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 (5) 존치용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존치된 공장 또는 건축물

나. 지원시설구역

구 분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근린생활시설 용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중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제3호의 제1종 균린생활시설, 제4호의 제2종 균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관람장 제외), 제6호의 종교시설, 제7호의 판매시설, 제8호의 운수시설(집배송 시설에 한함),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제11호의 노유자 시설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 제외), 제12호의 수련 시설, 제13호의 운동시설, 제14호의 업무시설, 제18호의 창고시설,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 및 석유 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 ·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폐차장, 매매장, 운전 학원 및 정비학원, 차고 및 주기장은 제외),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에 한함),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제28호의 장례식장
주차장 용지	주차장법 및 대구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한 노외주차장(자주식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
지원시설 용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중 · 제18호의 창고시설(냉장 및 냉동창고, 집배송 시설 제외) ※ 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은 골판지, 종이(지류), 인쇄기기등 출판·인쇄 관련 수송을 위한 건축물만 해당 · 제7호 판매시설 중 서적, 잡지 및 신문 도매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인쇄기기설치업, 인쇄관련기계수리업을 하기 위한 건축물만 해당 ·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제14호 업무시설, 제3호 제1종 균린생활 시설, 제4호 제2종 균린생활시설(단, 단란주점, 안마 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제17호 공장] · 산집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관리기관이 출판산업단지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지원시설용지 내 건축물의 범위 중 목적외 이용(산업단지관리지침 제12조 및 14조 규정에 의거 임대(임차)면적은 건축연면적의 1/3범위 내에서 가능한 시설임)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제11호의 노유자시설(「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 제외), 제13호의 운동시설 (가항만 해당),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나항(1호에 한함)

- 다. 공공시설구역 : 공공기관의 청사 또는 공공시설
 - 라. 기존의 존치구역(산집법 제30조에 의거 존치된 기존 공장, 건축물 등)은 산업시설구역에 편입하고, 공공시설구역 내에 있던 공원, 녹지는 녹지구역으로 편입
 - 마. 녹지구역 : 공원,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 ※ 용도별구획 평면도 : 별첨 2

3) 업종별 공장 배치계획

가. 배치기준

- (1) 관련 업종의 인접배치를 통한 계열화 촉진
- (2) 월곡로를 기준으로 북측지역의 산업용지는 협동화 사업단지 조성

4) 입주 관리계획(변경)

가. 입주대상 업종(변경)

(1) 산업시설구역(변경)

- ① 펠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 ②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 ③ 출판업(J58)
- ④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J59)
 - * 단,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J5914) 제외
- ⑤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
- ⑥ 정보서비스업(J63)(단, J63999-1 제외)
- ⑦ 태양력발전업(D35114)
- ⑧ 비주거용건물임대업(L68112)
- ⑨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C33910)
- ⑩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C33920)
- ⑪ 광고업(M713)
- ⑫ 전문 디자인업(M7320)
- ⑬ 그 외 다음의 허용업종은 공장설립 완료 후 추가할 수 있다.(단, ① ~ ⑥, ⑨ ~ ⑫ 업종을 포함하여 추가 가능, 단독 입주 불가능)
 - ⓐ 전자 부품 제조업(C262)
 - ⓑ 컴퓨터 및 주변 장치 제조업(C263)
 - ⓓ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180)

- ④ 사진 촬영 및 처리업(M7330)
- ⑤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M73902)
- ⑥ 사무 지원 서비스업(N7591)

⑭ 산업집적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 중 지식산업센터에 적합한 공장 및 산업집적법 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가능한 업종(추가)

(2) 지원시설구역

- ① 서적, 잡지 및 신문도매업
 - ②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 ③ 인쇄기기설치업
 - ④ 인쇄관련기계수리업
 - ⑤ 보관 및 창고업(냉장 및 냉동창고업, 집배송업 제외)
 - ⑥ 운송업(골판지, 종이(지류), 인쇄기기등 출판·인쇄 관련 수송만 해당)
 - ⑦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업무시설,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공장)
- ※ 지원시설용지 내 건축물의 범위 중 목적외 이용 : 지원시설용지의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에 해당되는 시설물로써 지원시설용지입주기업에 한하여 산업단지관리지침 제12조 및 14조 규정에 의거 임대(임차) 면적은 건축연면적의 1/3범위내에서 가능한 시설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중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제11호의 노유자시설(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 복지주택(제외), 제13호의 운동시설(가항만 해당),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나 항(1호에 한함)

나. 입주자격

(1) 산업시설구역

- ①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
- 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받은 단체(협회, 조합)
- ③ 산집법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자
- ④ 산집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⑤ 비주거용건물임대업(L68112)은 산집법 제3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공장등록한 입주기업체에 한함

(2) 지원시설구역

- ①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격을 갖춘 자
- ②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다. 입주우선 순위

(1) 산업시설구역

- ① 협동화사업단지내 입주희망 업체
- ② 산업단지 입지여건에 적합한 미래 유망업종
- ③ 지역 내 전후방산업관련 효과가 큰 업종
- ④ 외국인 투자 기업(외국인 투자 비율이 30%이상)
- ⑤ 역외기업
- ⑥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공해가 적은 업종
- ⑦ 관리기관은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위 순위 외에 기타 순위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2) 지원시설구역

- ① 출판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 설치계획에 부합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 존치구역

- ① 현재 존치구역에 영업을 하고 있는 자

라. 입주업체 선정절차

(1) 입주업체 선정은 산입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3 규정에 의한 체분계획 및 대구광역시 방침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함

마. 입주절차

- (1) 산업단지내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산집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2) 제(1항)의 결과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이 체결된 업체는 입주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III. 산업단지 사후 관리계획

1) 세부관리계획

가. 분양용지 관리

- (1) 산업단지 내 분양용지는 산집법과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
- (2)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하거나 분양용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입주계약 해지 시 분양계약은 자동 해지됨
 - ①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사용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장 건설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 ② 분양받은 용지를 불법 양도하거나 법인인 입주기업체가 건물의 준공(공장은 공장등록)을 필하기 전에 그 출자총액 또는 발행주식의 50% 이상 소유자를 변경한 때
 - ③ 산집법 제4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
 - ④ 분양계약 후 관련규정에 따른 회지의 분할 및 합병에 대한 절차 없이 분할 합병한 때
- (3)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임대코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① 변경 계약은 산업단지 지정목적에 적합한 업체에 한함
 - ② 임대계약기간은 5년 이상(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3년 이상)으로 한다.
- (4)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관리기관에 취득신고 및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법정기간(6개월)내 미 계약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함.
- (5) 1,650m² 면적 이상의 산업용지를 분할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권자(대구 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나. 환경관리

- (1)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2)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3) 단지내 입주기업체 조경(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 제1항)
 - ① 산집법 제2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용지 안의 조경의무를 면제한다.
 - ② 면적이 200m²이상인 대지에 산업단지 밖에서 공장설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대지 안에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연면적이 $1,500\text{m}^2$ 미만인 공장의 경우에는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자체의 조례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 건축 연면적이 $2,000\text{m}^2$ 이상인 공장의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 건축 연면적이 $1,500\text{m}^2$ 이상 $2,000\text{m}^2$ 미만인 공장의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 ③ 제2항의 규정은 면적이 200m^2 이상인 대지(주거지역 및 상업 지역안의 대지를 제외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④ 입주기업체는 계약이후 그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를 분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할 후의 개별 필지가 $1,650\text{m}^2$ 이상 면적으로 분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주기업체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다. 안전관리

- (1)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 인근파출소, 소방파출소 및 지방 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재해복구 협조체제 구축
- (2) 입주업체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계도

라. 기반시설지원

- (1) 산업단지 내 설치된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여 관리
- (2) 산업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마. 존치용지관리

- (1) 산입법 제30조에 의거 존치된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은 신축이나 증축 또는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여 당초 존치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
- (2) 소유권 이전이나 다른 사유에 의하여 존치사유의 목적을 상실하는 경우 산업 시설용지로 환원하고 산업단지계획 변경 조치

바. 탄소중립 및 신·재생에너지 관리

-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에 의거하여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2023. 1. 1. 이후 신규로 입주하는 업체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 도시 계획, 구조고도화, 건물구조 등의 사유로 설치가 불가한 경우 예외로 한다.

- (2) 관리기관은 공장 및 건축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촉진하도록 노력하고, 공장 및 건축물을 신규로 취득한 입주사와 입주 계약 체결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유무를 통지하고 승계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용하는 자는 관리기관을 경유하여 관리권자에게 매년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가. 공장설립지원

- (1) 입주기업체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공장건축을 하는 경우 관계 법률상의 인·허가 업무대행 또는 지원활동을 함.
- (2) 입주기업체가 공장건설 등을 완료하고 관리기관에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등(사업개시신고)을 하는 경우 입주계약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현지에서 확인하고 완료신고서(사업개시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공장등록 등이 완료되었음을 입주업체에 통보

나. 생산활동 기반 구축

- (1) 생산활동 기반 구축을 위해 산업단지내 물류 부지를 확보하여 입주기업체의 원자재 및 생산제품의 운송·보관이 편리하도록 출판물 물류창고업 유치
- (2)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위해 무료취업 알선과 외국인근로자 관리, 병역특례업체 지정관리 등을 통한 입주기업체 지원 도모
- (3) 인쇄·출판업체의 집적화·계열화를 위해 출판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출판업체에 대한 비즈니스 및 생산활동 지원

다. 고용증대 및 근로자 복지사업

- (1) 단지 내 근로자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
- (2) 산업단지 녹지·공원내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라. 공공시설 설치계획

용도구분	세부용도 (시설명)	면적 (m ²)	비고
지원시설내 공공시설	출판산업지원센터	6,040m ²	관리기관, 유관기관, POD센터, 공동물류창고, 교육실 등

3)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가. 입주기업체는 계약 이후 그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할 후의 개별 필지가 1,650m² 이상 면적으로 분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주기업체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1) 소규모로 분할되어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내부도로 필요시 확보 기준은 폭 15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단, 인접도로 폭이 15M미만일 경우 인접 진입도로의 폭과 같게 하여야 한다)
 - (2) 위 도로는 반드시 관리청에 무상 귀속하는 조건하에 산업용지 분할을 허용
 - (3) 1,650m² 면적 이상의 산업용지를 분할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권자(대구 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4) 흙지의 분할은 개별 필지가 기 설치된 도시계획도로에 1면 이상이 접하도록 분할
- 나.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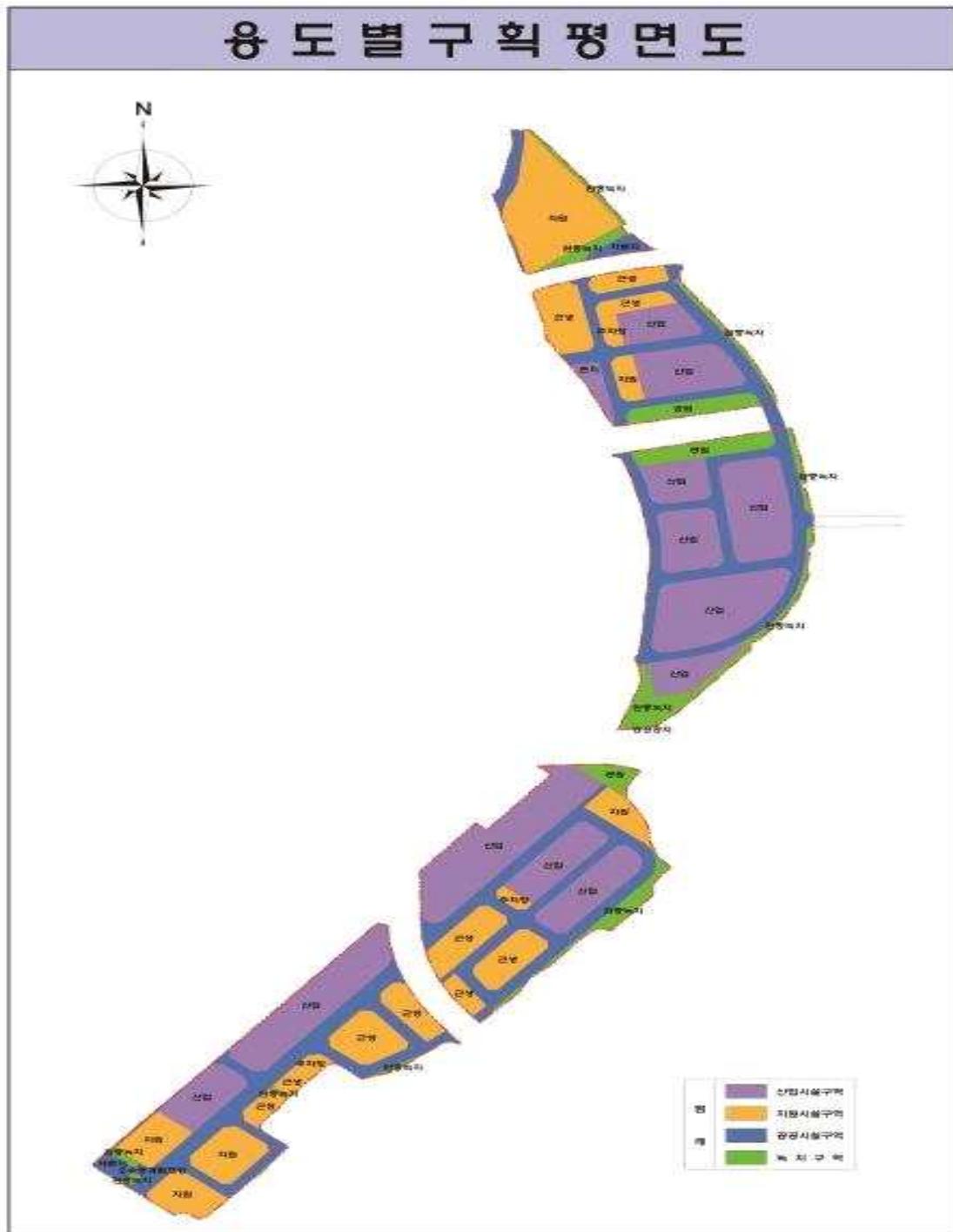
[별첨 1]

용도별 구역 면적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합 계	242,916.9	100.0	
산업시설구역	소 계	93,966.8	38.68
	제조업	92,310.3	38.0
	존치용지	1,656.5	0.68 1개소
지원시설구역	소 계	60,398.3	24.86
	지원시설용지	30,195.4	12.43
	근린생활시설용지	27,642.5	11.38
	주차장용지	2,560.4	1.05 3개소
공공시설구역	소 계	66,440.3	27.35
	도로	62,509.9	25.73
	보행자도로	1,371.1	0.56 5개소
	저류지	2,267.5	0.93 2개소
	공공공지	84.5	0.04 2개소
	오수중계펌프장	207.3	0.09 1개소
녹지구역	소 계	22,111.5	9.11 1개소
	공원	8,640.2	3.56 2개소
	녹지	13,471.3	5.55 4개소

[별첨 2]

용도별 구획 평면도



[별첨 3]

토지이용계획도

